

'코로나19' 대응 「국민내일배움카드」 추가 지원 지침

(‘20.7.27.(월), 인적자원개발과)

1. 목적

- '코로나19' 확산 여파로 실업자·재직자 등 어려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직업훈련 지원 확대(12만명, 1,654억원)
-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무급휴직자 지원과 함께 실업자·재직자 등에 대한 자부담 완화 등 한시적 조치 필요

2. 관련규정

-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조(지원 및 지원제외) 제1항
-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6조(훈련비 지원액) 제3항

3. 업무지침

① 지원 대상 추가

- (카드 발급) 90일 이상 무급휴직과 관계없이 무급휴직 중인 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 - * 대규모기업 무급휴직자(만 45세 미만이고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)
- (사용기간) 무급휴직 기간 동안 사용

② 훈련비 지원액 조정

- (한시적 자부담 완화) '코로나19' 영향으로 자부담 부담을 겪고 있는 실업자·재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동일하게 자부담 완화면제
- 현행 자부담률에서 15%p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% 이상은 자부담 면제

<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부담률(%) >

현행						변경					
구분	직종평균 취업률					직종평균 취업률					
	~70%	60~70%	50~60%	40~50%	40%~	~70%	60~70%	50~60%	40~50%	40%~	
대상	근로장려금 일반	7.5	12.5	17.5	22.5	27.5	전액	5	10	15	20
	훈련생	15	25	35	45	55		전액	10	20	30
	취성패 2유형			30	40	50	15			25	35
	취성패 1유형	전액				20	전액			20	

*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일반훈련생 자비부담률의 50% 경감
 ** 취업률 70%이상 직종(10개): 간호조무사, 법무, 자동차설계, 자동차운전운송, 발전설비운영 등

- (무급휴직자) 취성패 I 유형 적용하여 자부담 면제(취업률 40%미만은 부과)
- (적용기간) '20.8.1.~12.31.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

③ 훈련상담 생략

- (국기훈련) 훈련기관에서 신속한 훈련생 모집을 위해 모든 국기 훈련에 대해 훈련상담 생략

기존	변경(4.2.~)	추가
○ 훈련상담 2주 이내	○ 훈련상담 1주 이내 - 단, 신산업·뿌리산업 분야 훈련 및 기업맞춤형 훈련 과정은 훈련상담 생략	○ 훈련상담 1주 이내 - 단, 국기훈련 훈련상담 생략

- (적용기간) '20.8.1.~12.31.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

④ 행정사항

- (본부) 보도자료 배포, 유튜브·카드뉴스 등 홍보 실시(7월말)
- (고용센터) 관할지역 내 훈련기관 안내 및 지침 숙지
- (한국고용정보원) HRD-Net(행정지원시스템 포함) 공지 및 전산 조치
 - 지원 대상(무급휴직 기간 입력), 훈련비 지원액 완화 등 안내 및 전산 반영